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1호(2022.3.29)로 재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

라. 재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 마련(안 제24조)

재난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등 교통
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사. 규제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